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29 발의연월일: 2024. 8. 7.

발 의 자:정춘생·신장식·최민희

서왕진 · 김준형 · 박은정

김재원 · 차규근 · 김선민

이해민 · 강경숙 · 조 국

복기왕・황운하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특히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 된 가정을 기반으로 돌봄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제76 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을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,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 한다.

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3(가족돌봄휴직·휴가 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 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(이하 "가족돌봄휴직등"이라 한다)를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 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 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돌봄휴직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 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등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

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는 가족돌봄휴직등 시작일 당시 「근로기준법」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.
- ⑤ 그 밖에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77조제1항 전단 중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을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'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으로"를 "'출산전후휴가 급여등" 또는 "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"로, "'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"로"를 "'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", "배우자 출산휴가" 또는 "가족돌봄휴직등"으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을 "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'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"으로"를 각각 "'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"으로"를 각각 "'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" 또는 "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"로, "'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"로"를 "'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"로"를 "'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" 또는 "가족돌봄휴

제116조제1항제3호 중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등"을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,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 돌봄휴직등 급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보험료) ① (생 략)	제6조(보험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	②
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	
고용안정・직업능력개발 사업	
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	
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	
용에 충당한다. 다만, 실업급여	
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	
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,	
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	
급여의 지급, 제73조의2제1항에	
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	
여의 지급, 제75조·제76조의2	
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	출산전후휴가 급여등,
및 제77조의4·제77조의9에 따	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
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	등 급여
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	
	<u>.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76조의3(가족돌봄휴직·휴가
	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
	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

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(이하 "가족돌봄 휴직등"이라 한다)를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등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족돌봄휴직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직등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신청 을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등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급 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급 여등의 반환명령, 사실 확인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 조.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 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 여"는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" 으로, 제71조 및 제73조 중 "육 아휴직"은 각각 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 산휴가"로 본다.

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

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 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

등 급여는 가족돌봄휴직등 시 작일 당시 「근로기준법」 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.

⑤ 그 밖에 가족돌봄휴직등 급 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.

여등 및 가족돌봄휴직등 급여-

----<u>"출산전후휴가</u> 급여등" 또 는 "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--

산·사산휴가", "배우자 출산휴 가" 또는 "가족돌봄휴직등"으 로----.

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

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, 사실 확인,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, 제71조 및 제73조(제1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"구직급여"는 "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"으로, 제71조 및 제73조 중 "육아휴직"은 각각 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"로, "육아휴직 급여"는 "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"으로 본다.

제116조(벌칙) ① 사업주와 공모 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• 2. (생략)

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
"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
하는 금액" 또는 "가족돌봄휴
직등 급여"로
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"
또는 "가족돌봄휴직등"으로
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"
또는 "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로
<u>.</u>
세116조(벌칙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- 3.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 3. -----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
- 4. (생략)
- ② (생 략)
- 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--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,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가족 돌봄휴직등 급여
 - 4. (현행과 같음)
 - ② (현행과 같음)